

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나50421(본소), 2024나50438(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나50421(본소), 2024나50438(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8 선고 2022가소9381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8. 선고 2022가소93815(본소),
2022가소6217(반소)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0. 초순경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 'D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판넬, 잡철,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20. 10. 30.부터 2022. 2. 25.까지 합계 388,797,1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20. 10. 26. 55,000,000원, 2020. 12. 15.

33,000,000원, 2021. 5. 14. 55,000,000원, 2021. 6. 30. 49,500,000원, 2021. 9. 15. 66,000,000원, 2021. 12. 31. 24,876,720원, 2022. 5. 31. 87,420,447원, 합계 370,797,16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면서, 총 공사대금 388,797,167원 중 8,000,000원을 감액하여 380,797,167원으로 확정하기로 하되, 잔금 10,000,000원은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받으면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1. 4. 12. 16,500,000원, 2021. 4. 14. 11,000,000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398,297,16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전부 변제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과다 수령한 17,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회의 금원 입금은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충남 E리 근린생활시설 관련 별건 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이 2022. 11. 4. 원고에게 'E리 계산서 및 입금내역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고가 2021. 4. 13. 발행한 세금계산서(16,500,000원), 2021. 4. 28. 발행한 세금계산서(11,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2021. 4. 12. 16,500,000원, 2021. 4. 14. 11,000,000원을 입금한 거래내역을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마지막으로 87,420,447원을 입금받은 날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2회의 입금 내역을 제외하면 공사대금 수령액 합계가 370,797,167원으로 위 약정서의 정산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회의 금원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잔금이 남아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진, 판사 김용태, 판사 이수영